

수원지방법원 2024. 11. 26 선고 2024가단581689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5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6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48,35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. 3. 1.부터 2024. 8. 1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(단, 채권자는 원고, 채무자는 피고이다)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

따라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(피고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).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48,35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회째 연체한 날인 2022. 3. 1.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24. 8. 1.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양상익

별지